

예 산 총 칙

제1조 2007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합		계	2,843,654,000	85,309,620
일	반	회	계	2,383,340,000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259,057,000	7,771,710
기 타 특 별 회 계			201,257,000	6,037,710
		· 독립강원전문대학운영	9,561,000	286,830
		· 의료보호기금운영	180,843,000	5,425,290
		· 학교용지부담금	10,853,000	325,590

제2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 없음"

제4조 2007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 없음"

제6조 200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7조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2,044,201천원으로 한다.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